

## 미래에셋증권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설명서

### ■ 계좌개요

제도개요	<input type="checkbox"/>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하위 법령에 의해 중개형 ISA 계좌가 신설되었으며 매매가능계좌개설을 통해 고객이 직접 해당 계좌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input type="checkbox"/> 가입일 또는 만기연장일 기준 만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직전과세기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거주자, 농어민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일 경우 가입 및 연장 불가합니다.		
부적격 통보	<input type="checkbox"/> 국세청장은 가입연도 및 만기 연장연도의 다음연도에 가입자격을 확인하고 은행연합회에 부적격자를 통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조의 4③)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민형 가입자 대상 여부 : 다음연도 2월 말</li> <li>-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 다음연도 4월 30일</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경정 등으로 금융소득 변경되는 경우 10월 31일까지 재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15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 요건 충족 여부 : 다음연도 8월 31일</li> </ul> <input type="checkbox"/> 부적격통보를 받은 계좌에 대해서는 추가 입금 및 매수가 제한되며, 이의신청이 해소된 이후 가입자격 부적격이 최종 확정되면 세제혜택의 소멸 혹은 추징, 계좌는 해지하여야 합니다.		
납입한도	<input type="checkbox"/> 연납입한도 = $2천만원 \times [1 + \text{가입 후 경과한 연수}(\text{경과한 연수가 } 4\text{년 이상인 경우에는 } 4\text{년으로 한다})] - \text{누적 납입금액}$	가입일	입금일
최소가입금액	<input type="checkbox"/> 1원	가입일	입금일
만기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자유롭게 설정 가능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 ISA 계좌개설일에 미 입금 시 만기일은 가입일(입금일)에 맞춰 순연됩니다.</p> <p>(ex. 만기 '27.3.22로 '24.3.22에 계좌개설 후 '24.4.22 입금 시 만기는 '27.4.22로 순연)</p> <input type="checkbox"/> 만기연장은 만기일 90일 전부터 만기일 전 영업일 까지만 가능합니다. (만기일부터 연장 불가)		
만기해지	<input type="checkbox"/> 투자자는 현금화 해지와 실물(일부 혹은 전체)보유 해지 중 선택 가능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실물보유해지 시 해지 이후의 매도(환매), 배당금 등 입금 시에는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input type="checkbox"/> 해지 시점에 과세이연을 통한 과세부분이 일괄 처리되며 이때 해지일 이후의 매도(환매), 배당금 등은 일반과세 대상입니다. <input type="checkbox"/> 납부세액이 부족할 경우 해지가 불가합니다. 추가입금 또는 보유상품 매도를 통해 세액납부 및 해지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input type="checkbox"/> 납입원금 합계액 한도 내에서 인출 가능하며, 인출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b>중도인출 시 중도인출한 한도는 재생성되지 않으며 잔여한도 만큼만 입금 가능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b> <input type="checkbox"/> 인출일 현재 일반과세 된다고 가정 시 예상되는 제세금은 인출가능금액에서 제외됩니다. <input type="checkbox"/> 중개형 ISA 출금가능금액= $\{\text{Min}[\text{순납입금액}, \text{인출가능현금}] - \text{총세액(거래세제외)} - 1\text{원}\}$ (단, 출금 가능금액 < 0 이면 출금불가)		
중도해지	<input type="checkbox"/> 중도해지 시 전액해지만 가능합니다(일부해지 불가). <input type="checkbox"/> 중도해지(가입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특별해지 사유는 제외)시 해당 계좌는 해지되고 세제혜택 소멸 및 세제혜택분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투자자가 중도해지를 위해 계좌에 운용중인 상품을 해당 상품의 만기(의무가입기간)일 도래 전 해지할 경우, 중도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배당 혹은 이자 수익의 감소 또는 과		

	<p>세 혜택 적용 불가 등 제반 불이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납부세액이 부족할 경우 해지가 불가합니다. 추가입금 또는 보유상품 매도를 통해 세액납부 및 해지 가능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중도해지로 인해 원천징수된 금액은 모두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됩니다.</p>
비저축금	<p><input type="checkbox"/> 비저축금은 유상청약, 주식관련 사채청약 등 권리행사 및 세금미수시 납입한도가 부족할 때 이용 가능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비저축 입금은 내점 또는 유선으로 가능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유선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사 수시입출금계좌를 보유하여야 하고 당사 중개형ISA 계좌간 계좌대체 약정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p>
중도해지수수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 ■ 과세 특례

	유형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비과세 한도	200만원	400만원	
비과세 한도 등	<input type="checkbox"/>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만기는 3년이 넘는 범위에서 고객이 지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서민형 : ①총급여 5천만원 이하 ②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 - 농어민 : 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의 농어민			
	<b>※ 서민형 가입 후 만기연장 시 일반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만기연장 후의 유형으로 세제혜택 적용됩니다.</b>			
분리과세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초과 소득분에 대해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하지 않음)			
손익통산	<input type="checkbox"/> 손익통산은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유형별(일반형 또는 서민형/농어민형) 비과세한도 초과소득분에 대하여 분리과세 적용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각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은 계좌해지일까지 이연하여 합산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 시점의 이동평균법으로 산정합니다(원미만 절사). <input type="checkbox"/> 중개형 ISA는 과표대상 소득금액에서 제비용(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을 차감 후, 주식매매차손(주식매매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최종 손실분)을 합산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손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중도해지(인출)에 대해서는 손익통산을 하지 않습니다(일반과세 처리).			
특별해지 사유	<input type="checkbox"/> 투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계약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천재지변 2. 투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투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신고			

## ■ 투자위험 및 유의사항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p><input type="checkbox"/> 중개형 ISA는 투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하는 계좌입니다.</p> <p><input type="checkbox"/> 중개형 ISA 계좌 내 예수금은 예탁금이용료 지급 대상입니다.</p> <p><input type="checkbox"/> 투자는 파생결합증권 등 만기가 있는 상품을 운용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의 만기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중개형 ISA 계좌 내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중개형ISA 내 편입된 금융상품 중 관계법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에 한하여 청약철회 가능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p>
-------------------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 투자는 중개형 ISA 계좌에 대한 투자위험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
- ※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6800) 통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고객 불편 사항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